

개별소비세법

[시행 2022. 8. 12.] [법률 제18973호, 2022. 8. 12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,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, 중유,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(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)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2년 8월 12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

● 법률 제18973호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

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7항 본문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30(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)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